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36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배경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 사이에 체결된 2021. 4.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발생

- (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은 2011. 7. 11.경 D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8.9%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 (2) D은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5. 2. 16.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3)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29890호), 위 법원은 2015. 11. 25. “D은 원고에게 8,747,655원 및 그 중 2,172,233원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2015. 12. 16. 확정되었다.

나. 상속 및 등기

- (1) D의 아버지 H는 2020. 10. 29. 사망하였고, 피고는 H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10. 29.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4.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I, C, J, D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자력

- (1)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소유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2) 소극재산으로는 ① K은행에 8,658,000원(2012. 5. 21. 채무발생)의 대출채무, ② L에

1,666,000원(2012. 8. 29. 채무발생)의 카드대금채무, ③ M은행에 금 239,793,000원(2010. 9. 8. 채무보증)의 보증채무, ④ 원고에게 2,172,233원(이 사건 양수금 채무) 합계 252,289,23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장, 법원행정처장, N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분할협약의 전에 한 위 각 대출에 따라 D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D에게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29890호)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D은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D에게는 채권 양도 통지서가 현출된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 양수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판결에 대하여 D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의 효력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중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질이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별지